

한일협정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회피하지 말아야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구성’의 답변시한이 18일로 다가왔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근거하여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을 정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날짜”로 보며 중재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당국자는 7월 16일 기자들에게 “중재위 관련해선 지금도 신중히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고는 “중재위 요청에 관한 수용 불가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명쾌하게 답이 난 것 같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코멘트와 달리 중재위로 갈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청와대의 입장은 아직도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듯하다.

최근의 한일간 외교갈등은 일본의 일방적인 경제제재 등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로 치닫고 있다. 현상태는 대법원 판결에서 유발된 것이어서 간단히 해결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엄중한 외교문제를 ‘죽창가’ 등의 감정적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청구권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본다.

외교의 절대 금물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시종 감정적이나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1965년 한일 협정이 체결된 지도 50년이 훨씬 넘었다. 그 기간만큼 한국 국내에선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개인청구권과 역사정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적 연혁이 있는 만큼 이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양립이 불가능한 것인지 현재의 국제법체계에서 명확히 판별해보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다. 또한 설사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제적·중립적인 중재를 통하여 결론이 나오면 한일 양국 국민이 흔쾌하게 수용하는 것이 이러한 첨예한 갈등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청와대를 포함한 외교부는 더 이상 위험에 처한 타조가 땅바닥에 머리 박는 식의 소극적 자세로 최근의 한일 갈등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입장을 확고히 한 채 오히려 한일청구권협정에 정해진 중재절차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면 일본이 당황해할지도 모른다. 그런 다음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관철하는 당당한 입장을 보이자. 이번 사태는 일본의 중재위 구성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외교적 해결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2019.7.17.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현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